

강릉원주대학교 ·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에 관한

업 무 협 약 서

[근거]

원자력안전법 제105조(전국 환경방사능감시),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7조(방사능측정소의 설치 · 운영)

강릉원주대학교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이하 ‘양 기관’ 이라 한다.)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접국 방사능 오염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,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환경방사선/능 상시감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전국 환경방사선/능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을 통해 국내외 방사능 비상을 감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노력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방사능측정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- ① 시설장비 및 연구비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한다.
- ② 시설장비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전력, 모니터링포스트 부지, 실험실 등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제공한다.
- ③ 시설장비 등의 이전 및 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부담한다.

④ 시설장비 이전 필요시 양 기관이 협의하여 방법, 일정 등을 정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부담하고 강릉원주대학교는 적합한 부지와 전력 등을 제공한다.

※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(국유재산의 무상대여), 국유재산법 제34조(사용료의 감면)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

제4조(기타) 위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, 유효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협약 기간 연장 거절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날인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2월 29일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총장직무대리 이 선 우

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원장 김 석 철

